■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20>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의신청 대상 민원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3. 7. 30.자 민원회신	
신청인	성명(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신청인 장여경
	주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전화번호 02-774-4551
거부처분을 받은 날	2013. 7. 30.	
거부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참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3 년 9 월 13 일

신청인 장 여 경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의신청 (신청인)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처리기관 : 해당 접수기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2013. 7. 30. 신청인들에게 한 민원회신결정(이하 '민원회신결정'이라 함) 상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들은 2013. 7. 23.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에게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질의1]
2013년 제9차 위원회 회의에 대한 민원인들의 방청신청에 대하여 귀 위원회 담당자는 '회의장 사정 등'을 이유로 방청인을 제한하여 진보네크워크센터 1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인, 공공운수노조 1인 및 사법연수원생 1인의 방청을 허가하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방청을 불허하였습니다.
1-가. 어떠한 사유로 다른 단체의 방청신청인은 1인으로 제한하여 허가하는데 비하여 언론사의 방청에 대하여는 불허한 것인지 그 사유 및 기준이 존재한다면 방청허가/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나. 민원인들이 제9차 회의에서 확인한바 8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중 4개의 의자에는 귀 위원회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자리에도 위 8개의 의자 배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이 의자를 배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나아가 방청인들이 착석하여 방청하여야 한다는 편의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동 위원회 방청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 법적 근거와 사실적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2013. 7. 30. 신청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회신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제4항에는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방청인 수를 4명으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노트북의 경우 녹음· 녹취 등의 기능이 가능하므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 참고로 제11회 위원회('13.6.24)의 경우에는 언론사 기자 1명이 방청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그러나 위의 답변은 신청인이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불충분한 답변을 한 것이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질의사항에서 제9회 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합니다)의 방청과 관련, 다른 단체의 방청신청인은 1인으로 제한하여 허가하는데 비하여 언론사의 방청에 대하여는 불허한 것인지, 그 방청허가/불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수를 4인으로 제한한 사실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답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채 "방청인 수를 4인으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만 밝히면서 이와 함께 "제11회 위원회는 언론사 기자가 방청한 사실이 있다"고 부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답변은 신청인들이 요청한 방청기준에 대한 설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으로서 더욱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먼저 기자의 방청제한과 관련하여, 제11회 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자의 방청이 허용되었음에도 어떠한 연유로 이 사건 회의의 방청은 불허된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회의 이전에는 방청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로서 시민사회 등의 관심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회의의 논의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사 기자의 방청을 불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서라도 어떠한 연유에서 각 단체의 방청자는 1인으로 제한하여 방청을 허용한 것과 달리 기자의 방청은 불허한 것인지, 그리고 제11회 위원회의 방청은 허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의의 방청은 불허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으로, '4인으로의 방청 제한'과 관련하여, 신청인들 또한 '회의장 사정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신청인들은 질의를 통해 '회의장 사정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방청인 수를 제한한 '사실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들이 직접 확인한 바, 회의장소의 여건상 여분의 의자를 의원석 뒤에 놓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였고, 이전 회의 등을 꾸준히 방청해왔던 진보네트워크가 그간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돌발행동 등을 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의장 사정과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방청인 수를 제한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신청인 측 담당직원은 이 사건 회의 방청시에도 규정상 문언만을 반복하여 언급하며 방청인수 제한을 주장할 뿐, 그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는 납득

할 만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방청인 제한 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위 '회의장 사정과 질서유지 등'의 사유중 어떠한 근거로 방청제한을 했는지를 적시하여 주시고(예컨대 회의장 사정, 질서유지,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사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의장 사정이 더 많은 방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질서유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방청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녹음, 녹취 불가 방침은 노트북 사용 불허 처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주장하였다시피 노트북 사용은 수기 메모에 편의를 더하는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노트북 사용을 녹음, 녹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트북 사용 불허 정책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 녹음, 녹취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경우 노트북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상기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의 방청인의 방청권에 대한 시각 및 자의적 방청권 제한에 대한 우려에 근거합니다. 알권리는 헌법해석으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 모두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위원회가 그 의사를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여 국가기관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무 및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를 모두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서의 의사공개원칙은 최대한 실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제한시에도 실질적, 형식적으로 합리성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의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방청권 제한은 이러한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청제한의 각종 결정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가능한 설명이 없었고, 특히 방청인의 수에 대한 제한결정은 방청신청이 있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신청인이 방청인의 방청권을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시혜적 대우'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감한 이슈라는 논의안건과 연관하여, '질서유지·회의장 사정'이라는 표면적 이유 뒤 이 논의와 관련한 방청 자체를 형해화시키려는 의도가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또한 낳게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서 방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청인의 수, 방청인이 많을 경우의 제한의 기준과 방법, 방청방법의 제한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방청기준의 제시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 답변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청제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